

##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53호
----------	--------

제출일자 : 2000. 2. .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개정이유

-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현행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개선·보완하여 퇴직준비휴가제를 현실에 맞도록 하고,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삽입규정을 명문화 하는 등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 임신중 출산전후 60일간 특별휴가를 혜용하도록 강제규정
- 출산후 1년간 1일 1시간 육아시간 혜용(신설)
- 보건휴가를 생리기와 임신중 검진을 위해 매월 1회 혜용

#### ○ 20년간이상 장기근속 및 퇴직준비 휴가제도 개선

- 1회에 한해 10일간 → 재직기간중 10일간으로 개정
- 퇴직준비 휴가대상에 조기퇴직자 포함

#### ○ 휴가기간중의 공휴일 삽입 규정 명문화

- 30일이상 계속 및 경조사 휴가는 공휴일을 포함일수에 포함
- 그외의 휴기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3. 조례개정(안) : 따로 붙임

### 4.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5. 관계법령발췌 : 따로 붙임

##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 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매 생리기마다 1일”을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겸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하며, 동조 제4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7항(종전 제6항)중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 중에”로 하고, 동조 제9항(종전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⑨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 사휴가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23조제12항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7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 산	배우자	1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1.~ 4. (생 략) 5. <u>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u> 6.~8. (생 략)	1.~ 4. (종전과 같음) 5. <u>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u> -----
제23조(특별휴가)①(생 략)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여자공무원은 <u>매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u>  < 신설 >	제23조(특별휴가)①(종전과 같음)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u>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u> ----- ④생후 1년의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 ⑥ (종전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④ · ⑤ (생 략)	

⑥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 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⑦ (생략)

⑧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및 근무상한 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생략)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 기간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  
-----재직기간  
중에 -----  
-----

⑧ (종전의 제7항과 같음)

⑨ -----정  
년퇴직이나 -----  
-----명예퇴직 또는 조기  
퇴직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

⑩ (종전 제9항과 같음)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  
-----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  
사 휴가의 경우에는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별표 3] (제23조제12항관련) 경조사별휴가일수표						
결혼	구분	대상	일수	구분	대상	일수
	본인	7	본인	7		
	자녀	1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갑	5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산	1	배우자(처)	1		
	사망	7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5		
	자녀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탈상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2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1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1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비고: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